

전통가구콘텐츠연구소 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본 연구소는 전통가구콘텐츠 디자인과 그와 연계한 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본 연구소는 예원예술대학교(이하 본교)부설 전통가구콘텐츠연구소(이하연구소)라 칭한다.

제3조(사업) 본 연구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.

1. 전통가구콘텐츠 산업 제영역의 전문적 학술연구
2.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 및 학술교류
3. 전통가구 개발 및 연계 문화산업 발굴
4. 전통가구콘텐츠 관련 기업과 산학협동으로 전통가구디자인개발
5. 연구지 발간 및 학술회의, 연구발표회 개최
6. 외부위탁연구과제의 수탁
7.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
제2장 조직

제4조(구성) ① 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위하여 다음의 기구를 둔다.

1. 소장 1인
2. 간사 1인
3. 자문위원
4. 연구위원 약간인

② 소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③ 간사는 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④ 소장은 교내·외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연구위원을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제5조(분과구성 및 운영) 연구소의 목적달성과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분과를 설치 운영한다.

1. 학술분과 : 전통가구콘텐츠 관련 학술발표 및 작품발표 업무를 수행한다.
2. 디자인제품 개발분과 : 전통가구콘텐츠 관련 문화유산 및 지역 고유의 유·무형문화재, 특산물 등을 연구하여 제품화하고 신제품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
3. 마케팅분과 : 본 연구소에서 개발한 제품 및 신제품의 마케팅 전략과 전통가구 산업의 시장조사 등을 연구한다.
4. 각 분과별 원활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소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5. 소장은 연구소의 원활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조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.
6. 소장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분과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.

제3장 위원회
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연구소의 소장이 되며 연구소의 임원과 연구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③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(매 학년초)와 임시운영위원회로 하며 임시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

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④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·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.

제7조(심의사항)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예산과 결산 심의
2. 운영계획 수립
3. 연구업무의 관리
4. 조교 및 연구보조원 임명
5. 업무 조정
6. 연구소 규정 개정
7. 기타 중요사항

제4장 재정

제8조(재정) 본 연구소의 경비는 교내지원금, 사업수익금, 기부금,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.

제9조(회계연도)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예원예술대학교의 회계 연도에 준하여 적용한다.

제10조(사업승인 및 보고) 연구소의 사업승인 및 보고는 예원예술대학교의 <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>에 따른다.

제11조(재산의 귀속) 본 연구소의 해산 결의가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.